

공 시 송 달 공 고

- 자동차관리법 법규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로 행정처분 통보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,
-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4. 7. 22.

영 등 포 구 청 장



- 제 목 :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 위반내용 : 공시송달 내역 참조
- 근거법령 : 자동차관리법 제50조, 제52조, 제81조,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별표2
- 공시송달 내역

자 동 차 등록번호	자동차 소유자	차명	사용본거지 주소	적발일시	적발내용	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예정된 처분		반송사유
							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명령	과태료 금액 (감경시 금액)	
			- 불	임	참	조 -			

- 공고기간 : 2024. 7. 22. ~ 2024. 8. 6.(15일간)

유의사항

-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·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제출(공시송달 공고)기간 이내에 과태료를

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% 범위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과태료 고지후 체납시에는 5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 납부기한 경과 때 1개월마다 증가산금 1.2%가 부과되어 최고 77%까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,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(점검 및 정비 명령 등) 규정에 의거, 자동차 임시검사(원상복구 포함)를 명령 하오니 기한내(공시송달 공고기간내) 이행하시기 바라며,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6.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 의 처 :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☎ (02-2670-3881) 끝.